

# 공사 관계 자 회의 자료

[2016년 은평소규모주택(다가구 등)시설물 보수공사]

2016. 03. 24

## S H 공사

(시설관리처 시설지원부)

# 내 용

## I. 주요내용

1. 2016년 은평 소규모주택 시설물보수공사 업무사항
2. 유의사항

### 【회의개요】

- 일 시 : 2016.03.24.(목)15:00
- 장 소 : 우리공사 5층 시설관리처장실
- 참석대상 : 공사관계자(SH공사 본사 및 주거복지센터 / 시공대표이사외)

# 1. 2016년 소규모주택(다가구 등)시설물 보수공사

◆ 소규모주택은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어 민원 신속처리 미흡  
 ◆ 불시에 발생하는 긴급 보수에 대한 “바로처리” 서비스 구축  
 ⇒ 은평을 시범센터로 하여 민원 적극대응

## □ 소규모주택 시설관리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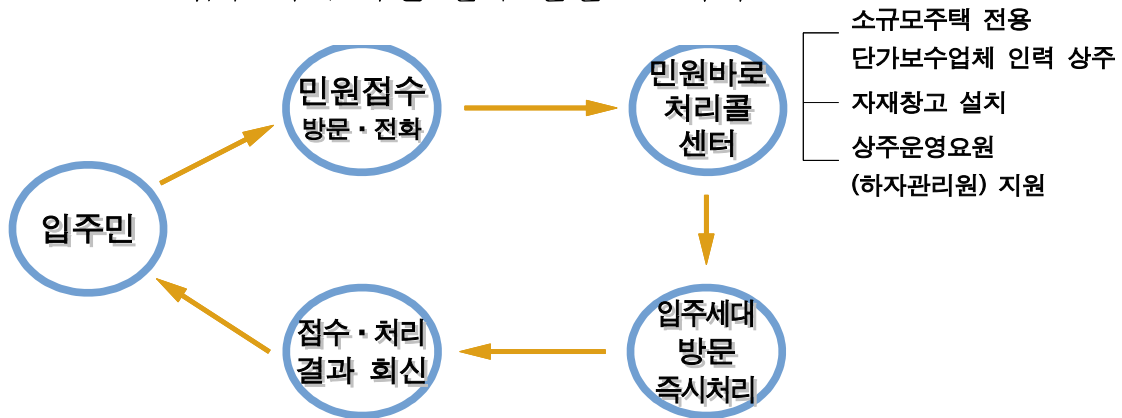
- 민원 신속처리 미흡
  - 민원바로처리 콜센터 운영
- 관리지역 은평 전역에 산재
  - 센터인원 관리전문으로 배치

## □ 시설물 보수체계 혁신

- 단가보수업체 현장책임자 의무 상주 ⇒ 책임시공, 신속한 하자처리
  - 단가보수 계약기간 중 현장책임자 의무상주 시스템 도입
  - 현장책임자 상주에 따른 신속한 하자보수 체계 강화
  - 현장상주 비용 반영으로 현장 책임시공 실현
- 소규모주택 민원바로처리 콜센터 도입(관리분소) 신설(안)

소규모주택 ONE-STOP 하자민원 혁신

- \* 1일 이내 처리결과(또는 계획) 입주자 회신 의무
- \* 접수·처리·회신 결과 일일보고체계



## 2. 유의사항

### ○ SH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사 관계자의 노력 요청

- ① SH공사 임직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·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(감사HOT-LINE 02-3410-3650)
- ② 금번 사업은 시범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부당한 업체의 고용은 일체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입찰유의서 내용 이행

① 대금e바로 (시스템 운영 02-553-3372)

② 하도급사항

- 기본사항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거 도금액3억미만의 금액은 100분의50만큼을 직접시공해야 함.다만, 시행령 제3항제1호에 의거 “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”는 하도급 가능 ⇒ 계약체결 전 협의(한국종합그라우팅은 기 제출: 의견은 회사기술능력으로 50% 직접시공 충분히 가능)

발주처의 승낙이 없을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(건설법)

- 제출서류 등 : 하도급대금지급합의서 제출,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(하도급 시), 근로계약서 작성(근로자와 계약 시)

③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: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⇒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, 지출영수증 증빙서류 제출

④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⇒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『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』 합의서 제출, 노무비 지급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

⑤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

⑥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명부 제출 ⇒ 예정업체를 5개이상(부득이한 경우 3개이상)

⑦ 그 외 공사착공전 공사담당자는 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투입

※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소규모주택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따라 당해 공사의 보수종류 및 범위가 조정 될수 있습니다.

### ○ 착공계 제출 및 공사관련

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,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, 공사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, 입찰유의서 일반서류 ⇒ 센터 및 본사와 협의하여 제출

② 보수공사 수행시 유의사항 철저히 이행

③ 은평센터와 협조하여 시설관리시스템(FMIS) 이행

첨부 : 공사관계자 회의자료1부.

“공사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은 시범 운영되는 금번 업무는 책임감을 갖고  
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”

## 공사관계자 회의자료 (별첨)

### ○ 2016년 은평 소규모주택 시설물 보수공사

관련분야	간 담 회 주 요 내 용
부조리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SH공사 임.직원에게 직.간접적으로 금품.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시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조치 예정</li> <li>○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(준공 이후도 포함)에서 관련 SH공사 임.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,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,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</li> </ul>
하도급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일업종간 하도급은 불가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하도급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 시행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"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"에 의거 우리공사 승인을 득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함.</li> <li>○ 하도급 POOL명단에 미등록된 업체 하도급 이행은 불가하나,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공사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.</li> <li>○ 불공정 하도급 행위 금지 / 이중계약, 구두계약, 특약 금지</li> </ul>
현장관리 및 자재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시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거 철저한 품질,안전,공정관리를 실시하여야 함.</li> <li>○ 사용자재는 공사시방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 사용할 것.</li> <li>○ <b>입찰공고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함.</b></li> <li>○ <b>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착공계 제출 시 공사감독의 승인 득하여 은평 주거복지센터에 책임기술자로 계약기간 중 의무적으로 배치.상주하여야 하며, 미 상주시 계약미이행으로 간주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조치 예정임 [1일 이내 처리결과(또는 계획)입주자 회신 의무]</b></li> </ul>
대금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,노무비, 장비/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「<a href="http://hado.eseoul.go.kr">대금e-바로(http://hado.eseoul.go.kr)</a>」의 대상사업이며, 최종계약자(하도급업체포함)는 『대금e바로』를 이용하여 하도급자, 건설근로자, 장비/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함.</li> <li>○ 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, 하도급대금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, SH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,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 조치 예정</li> </ul>
기 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수공사 작업자는 세대 또는 단지 방문시 조끼(근무복)를 착용하여 입주민이 보수공사 관계자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, 세대방문시 작업자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명확히 밝히고, 입주민에게 친절하게 보수공사에 임해야 함</li> </ul>